



[해외건설 법률플라자 2021] 제6회 화우-해외건설협회 공동 웨비나

결과보고

2021. 12. 23

□ 개요

- 행사명: [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1] 제6회, 화우 - 해건협 공동 웨비나
- 일시/장소: 2021. 12.22(수) 15:00~17:00 / Webex 화상회의
- 주 최: 해외건설협회, 법무법인 화우
- 후 원: 국토교통부
- 주 제: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공사비 회수 관련: 현안과 쟁점
- 참석자: 국토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, 정창구 센터장 등
국내건설 기업 등 약 120여 명

□ 주요 내용

- 개회사 (화우, 김연수 변호사, 박영우 변호사)
 - 행사 개요, 식순 및 참석자 소개
- 축사 (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)
 -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, 해외건설기업의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'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1'을 준비했음
 -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공사비 회수는 가장 본질적인 이슈이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.
 - 적재적소에 인력과 장비, 재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야하나, 공사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재무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공사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하며, 지속된 공사에서 추가적인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함.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조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계약조건에 따른 도급자의 권한을 최대한 확보해야할 것임

-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행 시 공사비 회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관련 쟁점 및 절차, 보호방안, 법률적 가이드 등 많은 정보를 획득하시길 바람.

○ 동남아시아 -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(화우, 한민영 변호사)

-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환경 : 투자법 및 관련 대통령 규정을 개정하면서 투자금지, 조건부 투자가능, 중소기업 지정 및 협업, 우대, 전면허용 등으로 구분하여 외국인에 투자개방 및 유치중
- 인도네시아 중기발전계획(RPJMN)에 따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 - 2020~2024년 간 5,957조 루피아(약 4,120억불)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이 있으며, 25개의 공항 건설, 신규 전력 발전소 등이 포함됨
- 인도네시아 건설계약 체결시 유의사항
 - 계약 자유 원칙 인정. 단, 강행규정 준수
 - 특별한 계약서 양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나, 건설업법에 따른 특정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 - 공사대금 미지급 및 유치권 : 공사대금 미지급시 법정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음
 - 분쟁 언어 : 외국 당사자가 참여하는 건설계약의 경우 건설법 상 계약은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이뤄져야 하며 분쟁시 인도네시아어가 준거언어가 되어야 함
 - 인도네시아 내 모든 상업거래는 루피아(IDR)를 사용해야하며, 국제 무역, 외화예금, 국제금융 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화거래가 가능함
 - 분쟁해결기구 : 인니법원에서의 소송 경우 건설분쟁은 일반 민사사건으로 분류되며, 인니 내 건설분쟁에 대해서는 중재를 선호함
 - 인도네시아 국가중재위원회(BANI)와 인도네시아 건설분쟁중재 및 대체 분쟁해결위원회(BADAPSKI)가 대표적인 중재기관임. 외국중재기관의 경우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(SIAC), 국제상업회의소(ICC) 중재법원이 이용됨
- 인도네시아 공사대금 회수 사례 소개 및 유의사항 점검

- 캄보디아 경제전망 : 중국 등 주요국가와의 FTA 등을 통해 시장 다변화 및 도로, 공항, 전력 등 각종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 중
- 수도와 항구도시인 시하누크빌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, 고층 주거건물, 상업건물, 대형몰 등의 인프라가 외국 투자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. 원조자금으로 국도 건설 및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프놈펜 신공항 건설 등 연결(Connecting) 인프라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
- 캄보디아 공사대금 회수 사례 소개 및 유의사항 점검
 - 한국건설회사가 캄보디아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고 캄보디아법원에서 집행승인을 받음

○ 동남아시아 - 베트남(화우, 최성도 변호사)

- 소송 현황 : 2017년 7월부터 법원 판결이 공개되었으나,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음
- 2020년도 베트남 국제중재센터(VIAC) 중재 현황을 보면, 건설 관련 분쟁이 14%를 차지하며 대금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분쟁이 87%를 차지함
- 건설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및 범위는 국가 자본 또는 공공투자 자본이 지출되는 건설프로젝트를 말함
- 준거법은 베트남 법을 따름.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여 건설계약은 베트남 건설법을 비롯하여 각종 건설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체결되어야 함
- 건설계약에 사용되는 언어는 베트남어이어야 함
 -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베트남어 및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택한 외국어 병기 가능
- 발주자는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보장해야하고, 대금지급 횟수, 시기, 조건 등을 건설계약을 통해 합의해야 함

- 대금회수를 위해 준거법인 베트남법에 따라 건설계약의 형태 및 계약금액 지급방식, 대금지급 절차, 조건,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에 관해 건설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의무를 준수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
- 발주자와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시 발주자로 하여금 은행/금융기관의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유도
- 대금지급의무 위반 시 56일 이내에 발주처에 이의제기 및 협상 등 추진 / 계약이행의 중단 및 공기 연장 권리 시행 /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/ 중재 및 소송 등 사후적 조치 가능

○ 중동지역(화우, 정용원 외국변호사)

- 중동지역 내 건설분쟁은 평균 분쟁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, 분쟁 기간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, 글로벌 추세와 비교하면 중동의 분쟁규모가 1.5~2배정도 큼
- 중동지역의 분쟁방식은 중재보다는 분쟁재정위원회를 선호함
- 중동지역의 분쟁규모가 큰 이유는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, 분쟁회피성향이 적으며, 분쟁대상 금액 및 항목이 크고 많기 때문임
- 중동지역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함, 일반적으로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며 준거법이 제3국법(영국법 등)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고려사항이 많고 효과적인 법률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함
- 현지소송 승소, 당사자간의 합의 등 대금회수 사례 소개 및 유의사항 점검(수익성 문제, 공문 및 기록 등 중재 염두 및 대비 필요 등)

○ 아프리카지역(화우, 경문정 변호사)

- 아프리카지역은 각국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및 인프라구축 중심 대형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, 타지역 대비 PPP 프로젝트 사례가 부족하며, 2010년 대 이후 중국자본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
- 과거 서구 제국주의국가 식민통치 영향으로 아프리카 관습법에 대륙

법·보통법·이슬람율법 등이 혼재해 있으며, 다수의 분쟁해결기고·중재 센터가 발달해 있음(약 72개 중재센터 운영중)

- 지급보증 등 계약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종합 법률 자문이 필수
- 유사 프로젝트 사례가 부족한 만큼 다른 국가, 다른 종류의 건설프로젝트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선행 사례 분석 및 사업리스크에 대한 계약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함
- 정부 발주 프로젝트의 경우, 추후 분쟁 발생가능성을 대비하여 분쟁 해결조항 신중히 검토

○ 중남미지역(화우, 엔리케 빌라플라나 외국변호사)

- 중남미 지역의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2021년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서서히 회복하는 국면에 있음
- 브라질, 칠레, 콜롬비아, 멕시코, 페루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시장 전망 및 프로젝트 소개, 사업참여 기회 및 방안 등 설명
-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및 법률적 내용 소개 등

□ 향후 계획

- 법률 웨비나 및 컨설팅(법률, 세무) 사업 지속 추진 등

□ 웨비나 사진



- 정책지원센터 - 끝.